

	사회봉사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MSU-
			제정일자	2014. 9. 30
			최종개정일자	
	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사회봉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함에 있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월간, 분기별 사회봉사 계획 심의
2. 국내외 봉사에 대한 봉사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
3.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
4. 기타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항 심의

제4조(구성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며, 간사는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. 위원은 외부 위원 3명을 포함시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또는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결)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